

< 수정안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긴급쉼터(여성폭력피해자 생활지원과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생활복지국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1회 이상”을 “2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p>6. (생략)</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u>생활복지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u>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②·③ (생략)</p> <p><u><신 설></u></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p>	<p>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긴급쉼터(여성폭력피해자 생활지원과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 <u>부구청장</u> ----- ----- <u>생활복지국장</u> ----- <u>이 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 ⑤ (생략)

--- 2회 -----

③ ~ ⑤ (현행과 같음)